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
2.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대회,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 관련 교육·홍보 사업
4.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